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자”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특례보증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이내 → 3천만원 이내
 - ※ 청년창업자 지원 신설 : 1명당 5천만원 이내
 - 청년창업자, 착한가격업소, 신용등급 관계없이 지원
 - 지원 기간 : 5년 이내

다.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 대상 : 특례보증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특례보증 용자금 이자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
- 지원 기간 : 2년 이내

라.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을 “구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나.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제2조제3호 중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출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대출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대출이자”를 “이자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년창업자”란 만 39세 이하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 창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나. 소상공인 창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제3조 제목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목 “(특례보증)”을 “(특례보증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를 “소상공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창업자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제3호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1. 대표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을 것

제4조제2항제4호(중전의 제1호) 중 “없는 자”를 “없을 것”으로 하고, 같

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것

제4조제2항제5호(중전의 제2호) 중 “없는 자”를 “없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경상북도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특례보증 지원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과 나목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원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상공인: 1인당 3천만원 이내

나. 청년창업자: 1인당 5천만원 이내

2. 지원 기간: 5년 이내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융자한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한도: 특례보증 융자금 이자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
2. 지원 기간: 2년 이내

③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5개 이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신용보증기관”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해당 신용보증재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보증기관”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9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제3조(신용보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은 이 조례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구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이바지함-----</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 <u>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u> 」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 <u>은행법</u> 」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 <u>농업협동조합법</u> 」 · 「 <u>수산업협동조합법</u> 」에 따른 협동조합, 「 <u>상호저축은행법</u> 」에 따른 저축은행과 「 <u>새마을금고법</u> 」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	제2조(정의) ----- -----. 1. “소상공인”이란 「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 <u>은행법</u> 」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 <u>농업협동조합법</u> 」 · 「 <u>수산업협동조합법</u> 」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다. 「 <u>상호저축은행법</u>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 <u>새마을금고법</u> 」에 따른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	<u>지역금고</u> 3. ----- ----- ----- -----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 --. 4. ----- -- 융자받은 대출금-----. 5. ----- ----- <u>이자</u>의 ----- -----. 6. “청년창업자”란 만 39세 이하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 창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나. 소상공인 창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제3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
--	---

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4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시장 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신설>

<신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자

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특례보증 지원대상) ① --
소상공인이 -----

-----.

②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창업자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제3호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1. 대표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을 것
3.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것
4. -----

없을 것
5. -----
-----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기타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이 저리로 용자 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용자가 가능한 5개 이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경상북도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삭 제>

제5조(특례보증 지원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과 나목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원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상공인: 1인당 3천만원 이내
나. 청년창업자: 1인당 5천만원 이내
2. 지원 기간: 5년 이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신 설>

제6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특례
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
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
한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융자한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의 지
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한도: 특례보증 융자금
이자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
자

2. 지원 기간: 2년 이내

③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타 금융
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5개 이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7조(보증재원) ① -----
----- 신용보증재단-----

----- 범위에서 해당 신
용보증재단에 --.

② -----
신용보증재단-----
-----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

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
수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2.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3.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
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
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
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
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
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
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제8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
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삭 제>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제9조(시행규칙) 이 <u>조례 시행에</u>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u>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u> <u>을 환수할 수 있다.</u> <u>1.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u> <u>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u> <u>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u> <u>경우</u> <u>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u> <u>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u> <u>3.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u> <u>사용한 경우</u> <u>4.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경우</u> <u>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u> <u>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u> 제9조(시행규칙) -- <u>조례의 시행</u> <u>에</u> ----- -----.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 10. 생략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5.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명칭의 사용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無盡會社),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새마을금고법」

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금고나 중앙회가 아니면 제4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6. ~ 9. 생략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재)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하여 출연하고,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함에 따라 세출 발생(안 제5조~제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간접적
금융지원을 위하여 시비 지원을 추계함.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증액하여 2021년부터 6억 출연하며
- 이차보전(3% 이내)에 대한 예산은 매년 출연금 대비하여 추계함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세출	출연금(특례보증)	400,000	500,000	500,000	600,000	
	이차보전	72,329	90,411	90,411	108,493	
		· 2018년 4,000,000,000원×3/100×220/365 · 2019년 5,000,000,000원×3/100×220/365 · 2020년 5,000,000,000원×3/100×220/365 · 2021년 6,000,000,000원×3/100×220/365				

4. 재원조달 방안 : 시비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과학경제과 류연순(480-6183)

소관 실 · 과		과학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주 광 하
	담 당	권 미 영
	담 당 자	류 연 순 (480-6183)